

의안번호	제 187 호
의결연월일	2004.10.16

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 사 경 과**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5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3.

제11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**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 : 이명원)**

**가. 제안이유**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,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**나. 주요골자**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구	분	당 초			변 경 (추가)			계				
		건수	수 량	지가산정액	건수	수 량	지가산정액	건수	수 량	지가산정액		
취 득	계	토지	32	29,062	3,025,404	△4	2,762	△1,516	28	31,824	3,023,888	
		건물	3	703.5	489,200				3	703.5	489,200	
	매입	토지	30	17,452	1,511,586	△5	△2,321	△9,141	25	15,131	1,502,445	
		건물	3	703.5	489,200				3	703.5	489,200	
	교환 취득	토지	2	11,610	1,513,818				2	11,610	1,513,818	
		건물										
	기타 취득	토지				1	5,083	7,625	1	5,083	7,625	
		건물										
	처 분	계	토지	21	28,134.2	1,676,024	1			21	28,134.2	1,676,024
			건물									
매각		토지	20	16,524.2	92,843				20	16,524.2	92,843	
		건물										
교환 처분		토지	1	11,610	1,583,181				1	11,610	1,583,181	
		건물										

**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정진영)**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추사기념관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하였던 장소(용역사에서 제시)는 토지의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제1지구, 제2지구 공히 건물배치가 불가하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이는 용역수행과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의 협조 내지는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,
- 행정의 효율성, 적시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·답변요지**

- 생략

**5. 토론요지**

- 없음

**6. 심사결과**

- 원안가결

**7. 소수의견요지**

- 없음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없음